

투자설명서

JP 모간 글로벌 이머징 마켓 주식 종류형 자투자신탁 1호

이 투자설명서는 JP모간 글로벌 이머징 마켓 주식종류형 자투자신탁 1호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하여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가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위험, 주된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투자방침, 가입방법, 투자금 회수 방법, 관련 보수 및 수수료, 과세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JP 모간 글로벌 이머징 마켓 주식종류형 자투자신탁 1호

투자신탁명	JP 모간 글로벌 이머징 마켓 주식종류형 자투자신탁 1호
자산운용회사명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
모투자신탁	JP 모간 글로벌 이머징 마켓 주식형 모투자신탁
모투자신탁의 해외운용위탁자산 운용회사명	JPMorgan Asset Management (UK) Limited
판매회사명 및 상담 가능 전화번호	<p> 외환은행 ☎ 1544-3000 삼성증권 ☎ 1588-2323 한국씨티은행 ☎ 1588-5753 광주은행 ☎ 1588-3388 HSBC 은행 서울지점 ☎ 1588-1770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 02)3702-3114 하나은행 ☎ 02)2002-1111 하나대투증권 ☎ 1588-3111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 ☎ 02)3707-0500 대신증권 ☎ 02)769-2000 </p> <p> 판매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합니다 </p> <p> ※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p>
작성기준일	2008. 9. 16.
투자설명서 비치 · 공시장소 및 인터넷 게시주소	각 판매회사 본 · 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 (www.jpmorganam.co.kr)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amak.or.kr)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요약(핵심설명서)

용어 정의

제 1 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 I. 투자신탁의 개요
명칭, 신탁계약기간, 분류, 자산운용회사, 최초설정일 등 연혁, 수탁고 추이, 해지사유
- II. 투자정보
투자목적, 주요 투자전략, 주요 투자위험,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운용전문인력, 투자실적 추이
- III. 수수료·보수, 과세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매입, 환매, 이익 등의 분배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투자전략, 투자위험, 투자대상, 투자제한
- II. 자산의 평가
자산의 평가
-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매입관련 유의사항, 환매관련 유의사항, 분배관련 유의사항

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 I. 자산운용회사
회사의 개요, 주요 업무, 최근 2 개 사업연도의 요약 재무내용, 운용자산규모,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II. 판매회사
회사의 개요, 주요 업무
- III. 수탁회사
회사의 개요, 주요 업무
- IV. 일반사무관리회사
회사의 개요, 주요 업무
- V. 채권평가회사
회사의 개요, 주요 업무

제 4 부 수익자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I. 수익자의 권리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 잔여재산분배,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재판관할,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II. 공시
정기공시 및 보고서, 수시공시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핵심설명서)

I 투자신탁의 개요 (본문 7쪽)

1. 명 칭 : JP 모간 글로벌 이머징 마켓 주식종류형 자투자신탁 1호
2. 신탁계약기간 : 이 상품은 추가형 상품으로 별도의 종료일이 없습니다.
3. 분 류 : 주식형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4. 자산운용회사 :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

II 투자정보 (본문 7~9쪽)

구 분	주요내용
1. 투자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이머징 마켓 국가들(일본 및 한국제외)에 설립 또는 상장되었거나 글로벌 이머징 마켓의 경제와 관련된 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 자본증식을 추구 - 다만,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 - 비교지수 : MSCI Global Emerging Market(ex Korea) Index
2. 주요투자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투자신탁 : 투자자산의 100%이하를 JP 모간 글로벌 이머징 마켓 주식형 모투자신탁에 투자 - 모투자신탁 : JP 모간 글로벌 이머징 마켓 주식형 모투자신탁은 자산의 대부분을 글로벌 이머징 마켓에 설립 또는 상장되었거나 글로벌 이머징 마켓의 경제와 관련된 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 - 미달러화 환율변동 위험에 대한 헷지하며 목표 환헷지 비율은 최고 100% 수준
3. 주요투자위험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주식의 가격변동 및 환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5등급 중 1등급으로 매우 높음. - 따라서, 높은 자본증식을 추구하고 높은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장기투자자에게 적합
5. 기준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투자기구(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 - 판매회사 영업점,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6. 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2008년 6월말 기준)		주요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간접투자기구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기준환	40세	이사	11개	약 9,76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시간 대학교 - 동서증권, 동원증권, 동부화재 CJ자산운용 -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

7. 투자실적추이 : 최초 설정되는 투자신탁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8. 운용위탁 : 자산운용회사의 계열회사인 JPMorgan Asset Management (UK) Limited 의 Luke Richdale 에게 모투자신탁의 외국통화표시자산의 운용업무를 위탁함

III 매입 · 환매절차(☞ 본문 11~ 17쪽)

1. 수수료 및 보수

구분		지급비율(연간, %)					
		A	C	C - F	C - W	C - E	C - S
클래스							
수익증권 판매 기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간접 투자기구등	Wrap account	온라인 투자자	자산운용회사 의 모회사
수익자에 게 직접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선취판매수수료 ¹⁾	납입금액의 1.2%	-	-	-	-	-
	환매 수수료 ¹⁾	30 일미만: 이익금의 10%	90 일미만: 이익금의 70%				
투자 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운용회사	연 0.850%					
	판매회사	연 1.00%	연 1.80%	연 0.040%	-	연 1.50%	연 0.030%
	기타 ²⁾	연 0.085%					
	보수합계	연 1.935%	연 2.735%	연 0.975%	연 0.935%	연 2.435%	연 0.965%
	기타비용 ³⁾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총보수· 비용비율 ⁴⁾	연 1.935% +실비	연 2.735% + 실비	연 0.975% + 실비	연 0.935% + 실비	연 2.435% + 실비	연 0.965% + 실비

- 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90일 미만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
- 2) 기타보수는 수탁회사보수와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를 포함함
- 3) 비용은 매매거래비용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임
- 4) 총보수·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총보수 비용수준을 나타냄

2. 과세 :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부담합니다. 다만,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선물의 매매차익 및 해외에서 발행되어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매매차익(2009년 12월 31일까지임) 및 모투자신탁이 이와 같은 매매차익을 자 투자신탁에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차익 등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당해 매매차익 등의 모투자 신탁의 이 투자신탁에 대한 분배 및 이 투자신탁의 대한민국 거주자인 개인투자자에 대한 분배는 비과세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거주자인 개인투자자의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도이익 중 당해 매매차익 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과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매입 · 환매절차 등 : 이 수익증권의 매입 · 환매는 판매회사의 영업시간(시 분 ~ 시 분)에만 가능

구분	오후 5시 이전	오후 5시 경과 후
매입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T)의 다음 영업일 (T+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T)의 제3영업일 (T+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매	환매청구일(T)로부터 제4영업일(T+3)에 공고 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 (T+8)에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청구일(T)로부터 제5영업일(T+4)에 공고 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0영업일 (T+9)에 환매대금을 지급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 (점포명) (판매직원 직위 및 성명) (은)는
(고객 성명) 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주요내용(환율변동 위험 포함)을 설명하였습니다.

2008. .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서명 또는 (인)

용어정의

1. “모투자신탁” 이라 함은 JP모간 글로벌 이머징 마켓 주식형 모투자신탁을 의미합니다.
2. “법” 이라 함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의미하며 추후에 개정되는 사항을 포함합니다.
3. “수익자” 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4. “수탁회사” 라 함은 국민은행을 의미합니다.
5. “신탁약관” 이라 함은 투자신탁의 신탁약관 및 추후에 변경되는 신탁약관을 의미합니다.
6. “영업일” 이라 함은 이 투자신탁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의미합니다. 단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7. “유가증권시장” 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을 의미합니다.
8. “일반사무관리회사” 라 함은 HSBC 펀드서비스(주)를 의미합니다.
9. “자산운용회사” 라 함은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를 의미합니다.
10.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 이라 함은 (i) 자산운용회사의 임직원 및 그 배우자, (ii) 자산운용회사의 계열회사 및 계열회사의 임직원 및 그 배우자, (iii) 자산운용회사의 최대주주, 주요주주 및 그 배우자, (iv) 자산운용회사가 운영하는 전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100분의 30 이상 판매한 판매회사, 그리고 (v) 자산운용회사가 운영하는 간접투자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수탁 보관하고 있는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를 의미합니다.
11. “투자설명서” 라 함은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를 의미합니다.
12. “투자신탁” 이라 함은 JP모간 글로벌 이머징 마켓 주식종류형 자투자신탁 1호를 의미합니다.
13. “판매회사” 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자산운용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판매회사들을 의미합니다.
14. “외국통화표시자산” 이라 함은 모투자신탁의 자산으로서 한국 외에서 발행되거나 거래되고 원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자산을 의미합니다
15.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이라 함은 **JPMorgan Asset Management (UK) Limited**를 의미합니다.

본 투자설명서에 인용되는 법과 규정 및 신탁약관의 조항들은, 추후 개정, 교체, 제정되는 해당 법과 규정 및 신탁약관 조항을 포함합니다.

제 1 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 | | |
|----------------------------|---|
| 1. 명칭 | JP 모간 글로벌 이머징 마켓 주식종류형 자투자신탁 1호 |
| 2. 신탁계약기간 | 이 상품은 추가형 상품으로 종료일이 따로 없습니다. |
| 3. 분류 | 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
| 4. 자산운용회사 |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 |
| - 모투자신탁의
해외위탁자산
운용회사 | JPMorgan Asset Management (UK) Limited |
| - 업무위탁 범위 | 모투자신탁의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업무 위탁
※ 단, 운용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에 있습니다. |
|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 2007. 11. 12. 투자신탁 설정 |
| 6. 수탁고 추이 | 최초 설정되는 투자신탁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

- | | |
|---------|---|
| 7. 해지사유 | 자산운용회사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하거나 1 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 억원에 미달하거나 투자신탁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II. 투자정보

- | | |
|---------|--|
| 1.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이머징 마켓 국가들(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동유럽과 아시아 지역(한국과 일본 제외)을 포함합니다. 이하 “글로벌 이머징 마켓”)에 설립 또는 상장되었거나 글로벌 이머징 마켓의 경제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 자본증식을 추구합니다. |
|---------|--|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비교지수 : MSCI Global Emerging Market(ex Korea) Index

2. 주요 투자전략 ① 당해 투자신탁의 주요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100이하를 JP모간 글로벌 이머징 마켓 주식형 모투자신탁에 투자합니다.

② 모투자신탁의 주요투자전략 : JP모간 글로벌 이머징 마켓 주식형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글로벌 이머징 마켓에 설립 또는 상장되었거나 글로벌 이머징 마켓의 경제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JP모간 글로벌 이머징 마켓 주식형 모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이고,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업무는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의 계열회사인 **JPMorgan Asset Management (UK) Limited**에게 위탁됩니다.

3.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됨에 따라 투자자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의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 위험 / 시장위험 및 개별 투자신탁 위험 / 유동성 위험 / 파생상품 투자 위험 / 헷지 위험 / 통화 위험 / 순자산가치 변동 위험 / 환매연기 위험 / 펀드규모 위험 / 신흥시장 위험 / 분산 위험 / 법률, 세금 및 규정 등 제도적 위험 /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위험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격은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운용에 의한 손익은 모두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 투자위험’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원본손실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펀드의 위험등급이 분류되었으며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집중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변동성이 높은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되므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주식시장의 높은 시장변동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하며, 높은 변동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는 투자등급 및 해당 투자신탁에 대한 위험 수준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 등급 안내¹⁾

위험등급	위험수준	내 용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경우
2등급	높은 위험	주식에 30%~60% 투자하는 경우
3등급	중간위험	주식에 30% 이하 투자 또는 투자적격등급이하의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4등급	낮은 위험	투자적격등급이상의 채권 및 어음등에 주로 투자하는 경우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단기 현금성 자산위주로 운용하는 경우(MMF등)

주1)위 등급 및 위험수준은 자산유형 및 관련 시장 등과 같은 다양한 투자유형의 과거 운용실적을 기초로 오직 참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 총액” 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 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클래스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 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클래스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며, 산정한 기준가격을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자산운용회사는 통보받은 기준가격을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를 통하여 매일 공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판매회사·자산운용회사·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6. 운용전문인력

성명	직위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기준환	이사	- 미시간 대학교 - 동서증권, 동원증권, 동부화재, CJ자산운용 -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

* 상기 운용역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하는 책임 운용전문인력이며 상기 책임 운용전문인력이 현재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의 수와 운용자산 규모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 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의 ‘I. 자산운용회사’ 중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Luke Richda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브리지 대학교 - 1993년 제이피모간자산운용 입사 - 중동지역 펀드매니저, 지중해지역 애널리스트, 중남미지역과 남아프리카지역전문 펀드매니저, - 현재 이머징마켓 펀드매니저

* 모투자신탁의 외국통화표시자산의 운용은 **JPMorgan Asset Management (UK) Limited**의 상기 펀드매니저가 담당합니다.

7. 투자실적추이 최초 설정되는 투자신탁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Ⅲ.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① 당해투자신탁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연간)	지급시기
선취판매 수수료	A 클래스 : 납입금액의 1.2%	매수시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수수료	C 클래스 : 없음	
	C-F 클래스 : 없음	
	C-W 클래스 : 없음	
	C-E 클래스 : 없음	
	C-S 클래스 : 없음	

	합계	A 클래스 : 납입금액의 1.2%+환매수수료 C 클래스 : 환매수수료 C-F 클래스 : 환매수수료 C-W 클래스 : 환매수수료 C-E 클래스 : 환매수수료 C-S 클래스 : 환매수수료
--	----	---

② 모투자신탁 :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수익자에게 직접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① 당해투자신탁

구분	지급비율(연간)	지급시기
자산운용회사 보수	연 1,000 분의 8.50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A 클래스 : 연 1,000 분의 10.00 C 클래스 : 연 1,000 분의 18.00 C-F 클래스 : 연 1,000 분의 0.40 C-W 클래스 : 연 1,000 분의 0.00 C-E 클래스 : 연 1,000 분의 15.00 C-S 클래스 : 연 1,000 분의 0.30	
수탁회사 보수	연 1,000 분의 0.60	
일반사무관리 회사 보수	연 1,000 분의 0.25	
기타비용 ¹⁾	실비	
투자신탁의 총 보수·비 용 비율	A 클래스 : 연 1,000 분의 19.35 + 실비 C 클래스 : 연 1,000 분의 27.35 + 실비 C-F 클래스 : 연 1,000 분의 9.75 + 실비 C-W 클래스 : 연 1,000 분의 9.35 + 실비 C-E 클래스 : 연 1,000 분의 24.35 + 실비 C-S 클래스 : 연 1,000 분의 9.65 + 실비	

주1) 기타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됩니다.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부과되고 이로부터 인출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증권의 매매수수료
- 투자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 투자증권등의 가격정보 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 비용
-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
- 수익자에 대한 통지 및 공고비용
-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

②모투자신탁 :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및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가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1,000만원 투자했을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예상수수료 및 보수는 투자기간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천원)

		최소투자 금액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A 클래스	매수금액	10,000	10,375	10,693	11,021	11,359	11,707	13,615
	선취수수료	119	-	-	-	-	-	-
	누적보수	-	191	388	591	801	1,016	2,199
	평가금액	9,881	10,184	10,496	10,818	11,150	11,491	13,364
C 클래스	매수금액	10,000	10,500	10,737	10,981	11,230	11,484	12,845
	누적보수	-	274	553	839	1,132	1,431	3,031
	평가금액	10,000	10,227	10,458	10,695	10,937	11,185	12,510
C-F 클래스	매수금액	10,000	10,500	10,923	1,362	11,820	12,295	14,977
	누적보수	-	98	199	304	414	528	1,172
	평가금액	10,000	10,403	10,821	11,257	11,710	12,181	14,838
C-W 클래스	매수금액	10,000	10,500	10,927	11,371	11,833	12,314	15,029
	누적보수	-	94	191	292	397	507	1,126
	평가금액	10,000	10,407	10,830	11,270	11,728	2,205	14,895
C-E 클래스	매수금액	10,000	10,500	10,769	11,046	11,329	11,619	13,188
	누적보수	-	244	493	749	1,012	1,282	2,736
	평가금액	10,000	10,257	10,520	10,789	11,066	11,350	12,882
C-S 클래스	매수금액	10,000	10,500	10,923	11,364	11,823	12,300	14,990
	누적보수	-	96	197	301	410	523	1,160
	평가금액	10,000	10,404	10823	11,260	11,714	12,187	14,852

주)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비용을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으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①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투자자들은 수익증권의 매입, 보유, 환매 및 기타 분배 등(이하 “관련 사건” 이라 합니다)에 대해 적용되는 거주지 혹은 설립지 법률에 의한 세금에 관하여 정통하여야 합니다. 투자신탁 또는 본 투자설명서의 제3장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어떠한 당사자도 관련 사건에 적용되는 과세결과에 대하여 보증 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과세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투자신탁과 관련 당사자들은 관련 사건에 따른 과세결과나 관련 사건으로 야기되는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다음 설명은 본 투자설명서 작성일 당시의 세금관련 한국법과 관행에 근거한 것이며 그 내용 및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설명은 전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모든 유형의 투자자들의 과세결과를 설명하지는 않으므로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의 2단계로 나누어집니다.

②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은 한국 세제 목적상 도관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투자신탁 자체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신탁이 몇몇 외국 법역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투자처분으로 인한 이득, 기타 소득은 소득세, 원천과세 또는 기타 세금의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 세액공제 목적상, 투자신탁은 한국법상 법인으로 취급되며 따라서 한국 세무당국에 14% 한도 내에서 외국 납부 세액에 대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원천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 세액은 한국법 및 규정에 따라 아래 공식에 의하여 환급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한 외국 세액공제 제도는 투자신탁 회계연도의 기초하에서 적용되고, 투자신탁이 적격 해외 증권으로부터의 매매차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개인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매매차익은 개인거주자인 투자자의 과세소득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

- 환급비율 = (사업연도 총소득 - 국내 비과세 소득) / 국외원천과세대상 소득

-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으로 함

취득세, 등록세 또는 증권거래세 등 투자재산의 매입과 보유에 관련하여 투자신탁이 지급하는 기타 세금은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투자신탁이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③ 수익자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이 분배하는 이익과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도 이익(환매이익-매입비용)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주식관련선물(단, 채권, 수익증권,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REITs와 같은 투자신탁 또는 펀드의 수익증권, 또는 해외 간접투자기구와 관련된 증권등의 예외가 있음)의 평가이익 및 매매차익을 이 투자신탁이 개별 투자자들에 분배하는 경우 해당 이익은 비과세됩니다.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외 주식(단, 채권, 수익증권,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REITs와 같은 투자신탁 또는 펀드의 수익증권, 또는 해외 간접투자기구와 관련된 증권등의 예외가 있음)의 평가이익 및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2009. 12. 31.까지 비과세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도이익이 비과세소득인 경우에 한하여 대한민국 개인거주자는 이러한 이익금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게됩니다.

한국 수익자들은 투자신탁에 대해서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자, 배당 또는 외화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분배되는 이익 및 수익증권의 매도이익 중 과세소득 부분은 원천징수되며(2007. 6. 현재 개인에 대해서는 15.4%, 법인에 대해서는 14.0%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0%), 판매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투자자 개인의 금융종합소득(배당, 이자 소득 포함)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소득 부분은 개인의 수입에 포함되며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최고 38.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됨). 법인의 경우 해당 소득은 전체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현재 최고 27.5% (개정안에 의하면 24.2%로 제안됨)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의 적용을 받으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됩니다.

본 투자설명서에 달리 설명되어 있더라도, 본 투자설명서의 수령인(그리고 수령인의 고용인, 대리인, 또는 기타 대리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본 투자설명서에서 예상된 거래에 관한 과세내용, 과세구조 및 이와 관련하여 그 수령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종류의 자료(의견 또는 기타 세금 분석 포함)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1. 매입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청구하거나 인터넷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매입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17시(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 투자자가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 다만, 자금납입이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에 이뤄진 경우에는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판매회사는 재량에 의하여 최소투자금액 또는 최소 보유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매입가격 산정시간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에 의해 기준시점이 결정되며, 본 투자신탁 매입의 취소(정정)는 자금납입일의 기준시간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추가적인 사항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1. 매입관련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환매

이 투자신탁의 모든 클래스 수익자는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관련 법령 및 이 투자신탁의 신탁약관과 설명서에 따라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이 투자신탁의 신탁약관과 투자설명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가 제한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17시[오후 5시] 이전에 환매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에 지급
- 수익자가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10영업일에 지급

환매가격 산정시간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에 의해 기준시점이 결정되며, 본 투자신탁 환매의 취소(정정)는 당일의 기준시간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의 모든 클래스는 환매수수료를 징구하며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 까지 투자신탁 재산에 편입합니다.

A 클래스	: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C 클래스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C-F 클래스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C-W 클래스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C-E 클래스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C-S 클래스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판매회사는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추가적인 사항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2. 환매관련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익 등의 분배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하며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달리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일(당일 포함)로부터 **10영업일 전에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이익등의 분배관련 추가적인 사항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3. 이익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 **당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재산의 100이하를 JP모간 글로벌 이머징 마켓 주식형 모투자신탁에 투자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JP모간 글로벌 이머징 마켓 주식형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글로벌 이머징 마켓에 설립 또는 상장되었거나 글로벌 이머징 마켓의 경제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JP모간 글로벌 이머징 마켓 주식형 모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이고,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업무는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의 계열회사인 **JPMorgan Asset Management (UK) Limited**에게 위탁됩니다. (해외위탁 자산운용회사 변동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예정)

※ 환헷지: 모투자신탁은 글로벌 이머징 마켓에 설립 또는 상장되었거나 글로벌 이머징 마켓의 경제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원/달러의 환율변동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가 운영하는 위탁자산 전체의 미국 달러 평가액을 기준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환헷지를 수행하고자 하며 목표 환헷지 비율은 최고 100% 수준으로 할 것입니다.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보고 목적으로 미국달러를 기준통화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모투자신탁은 자산의 대부분이 미국 달러 이외의 통화로 표시되기 때문에 관련 통화의 환율 변동에 따른 환위험에 노출되며 그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투자신탁의 환헷지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수탁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표는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구분	주요 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투자신탁 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을 발행한 회사와의 직접적인 거래이므로 그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의 원리금을 제때에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헷지위험	자산운용회사는 시장과 통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헷지기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것을 반드시 사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헷지기법은 지향하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통화위험	다양한 통화로 투자되는 투자신탁재산은 통화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헷지를 수행할 수 있으나 반드시 통화위험이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신탁운용의 성과는 환관련 규제 법규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변동 위험	매입/환매청구일과 매입/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매입/환매청구일로부터 매입/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 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펀드규모 위험	투자신탁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편입 및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하여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해 투자신탁재산을 투자할 몇몇 신흥 시장의 회계, 감사, 재무 보고 관련 기준은 국제 기준에 비하여 덜 엄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몇몇 기업들은 특정한 주요 공지사항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흥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와 위험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상당수의 신흥 시장 국가들은 근대적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거나 예상치 못한 급격한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와 관련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직접적인 규제를 고수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데, 이를 통해 갑작스럽고 광범위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를 감행할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의 경제와 투자신탁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흥시장의 국유화·몰수·세금징수·외국환 규제·정치적 변화, 정부 규제·사회적 불안정·외교 발전과 제한적 유동성, 가격 변동성, 외국인 투자 및 자본에 대한 규제와 같은 작은 자본 시장 투자의 위험, 그리고 높은 물가 인상과 금리, 정치·사회의 불확실성을 포함한 신흥 경제와 관련된 위험 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흥시장과 관련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유동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포트폴리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현함에 있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위험

상기 신흥시장위험에 부가하여, 몇몇 신흥시장 특유의 위험을 아래 설명하였습니다. 아래는 모든 신흥시장 위험을 열거한 것은 아니고 정보제공 목적으로 예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당해 투자신탁재산은 아래 언급한 신흥시장 이외의 다른 국가에도 투자될 것이며, 아래 언급한 위험 이외에도 개별 관련 시장에 따라 당해 투자신탁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중앙정부는 50년 이상 계획경제체제를 채택하여 왔습니다. 1978년 이래 중국정부는 분권화 및 시장 원리의 이용을 강조하는 경제 개혁을 실행하여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경제개혁의 많은 부분은 전례가 없거나 실험적인 것으로서 급격하게 조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정이나 변경은 중국에 있는 합작기업이나 중국기업의 A 주식 또는 B주식과 같은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의 투자는 베트남 시장과 관련된 위험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현행의 보유상한제, 증권거래소와 예탁원을 국가기관에서 상업적인 법인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는 현재 시장메카니즘의 변화 가능성,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가 오직 하나의 허가받은 베트남 증권회사에 하나의 거래계좌만을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거래에 대한 제약 등

	<p>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위험은 베트남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제한하고, 거래 환경에 경직성 및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p> <p>인도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당해 투자신탁은 인도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외국기관투자자(FII) 허가를 이용하여 투자하게 됩니다. . 인도중앙은행은 인도기업에 투자하는 인도의 외국기관투자자(FII)의 투자 제한을 모니터링하는 당국 역할을 합니다. 만약 모든 인도의 외국기관투자자의 총보유수량이 일정한도에 다다르면 인도중앙은행은 외국기관투자자와 관련 인도회사에게 매수에 대한 사전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허가요청에 대한 승인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도의 외환관리법과 외국기관투자자에 관한 법의 개정은 당해 투자신탁의 인도 투자에 제한을 가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p> <p>러시아에의 투자는 증권의 소유 및 보관에 있어 특별히 높은 위험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주식소유는 회사 또는 그 증권등록기관(수탁회사의 대리인이 아니며 수탁회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의 장부에 기재하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러시아 회사의 주식소유를 표창하는 증권은 수탁회사 또는 그 해외보관대리인 또는 중앙예탁시스템에 보관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과 효과적인 국가 규정 및 이행 부재로 인하여, 투자신탁은 사기, 과실 또는 단순 부주의로도 러시아 증권의 등록 및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p> <p>남아프리카공화국의 주식 결제주기는 다른 국가들보다 긴 6영업일입니다. 따라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유동성 관리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p> <p>카자흐스탄의 금융기관들은 국제적 신용경색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현지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경색된 자본시장환경 하에서 부채의 상환을 위하여 다시 자금을 차입해야 하는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물경제, 부동산 및 건설부문 또한 조정을 받고 있으며 S&P에서는 최근에 카자흐스탄의 신용등급을 BBB-로 하향 조정했습니다.</p>
<p>분산 위험</p>	<p>당해 투자신탁과 모투자신탁은 고도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보유종목의 측면에서 다양화되어 있더라도, 투자자들은 이러한 투자신탁은 그 투자대상국가의 상황악화로 인한 가격변동에 더 많이 노출되어, 광범위한 투자신탁, 예컨대, 글로벌주식형 투자신탁보다 변동이 심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p>

법률, 세금 및 규정등 제도적 위험	투자신탁에 운용되는 기간 중 법률, 세금 및 규정등의 제도적인 변화에 따라 운용중인 투자신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현행 법규정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규정이 제정되는 경우, 투자신탁 및 투자자에 적용되는 법적 요건이 중대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투자신탁 및 투자자에게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위험	금융시장은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변동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3. 투자대상

-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및 한도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 내용
①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100%이하	JP 모간 글로벌 이머징 마켓 주식형 모투자신탁
②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10%이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자산운용회사가 판단하기에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또는 자산운용회사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제외)
③	통화관련 장내 파생상품 및 장외 파생상품	통화관련 장내 파생상품 증거금 15% 이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외국의 선물거래소에 상장된 통화선물 (이하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 이라 합니다)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외국의 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통화선물 및 통화스왑(이하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이라 합니다). 단, 통화관련 장내파생 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 재산의 위험방지를 위한 목적으로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상기 ① 및 ②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마.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경우

- 모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
대상 및 한도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 내용
①	주식	10%이하	증권거래법 제 2 조 제 1 항 제 5 호 및 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합니다) 및 증권거래법 제 2 조 제 1 항 제 8 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예탁증서 (“주식”)
②	해외주식	60%이상	글로벌 이머징 마켓에 설립 또는 상장되었거나 글로벌 이머징 마켓의 경제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회사가 발행한 증권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증서로서 위 “주식” 의 성질을 구비한 것 (“해외주식”)
③	채권	40%이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 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채권”)
④	해외채권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또는 증서로서 위 “채권” 의 성질을 구비한 것(“해외채권”)
⑤	자산 유동화 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을 구비한 것 (“자산유동화증권”)
⑥	어음 및 해외어음	40%이하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어음”) 및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어음” 의 성질을 구비한 것(“해외어음”).
⑦	금리스왵거래		국내외 금리스왵거래. 단, 금리스왵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⑧수익증권	5% 이하 (외국간 접투자증 권20%이 하, 상장 지수간접 투자기구 30%이하)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자산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운용하는 외국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20 이하). 단,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간접 투자증권은 30%까지 투자 가능(외국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서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과 유사한 것을 포함)
⑨장내 파생상품	증거금 15% 이하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식선물, 주가지수 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 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국채선물옵션, 통화선물 및 통화선물옵션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⑩장외 파생 상품	주식 및 채권, 외국주식 및 외국채권 또는 통화와 관련되는 장외파 생상품	
⑪투자증권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	
⑫환매조건부 채권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100분의 50 이하	
⑬투자증권의 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⑭수탁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	
⑮단기대출, 금융기관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한 운용도 포함)	
<p>다음의 경우에는 ① ~ ⑦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p> <p>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경우</p>		

4. 투자제한

-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제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수탁회사에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2.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월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매 1월이 되는 날 전에 이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3.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 ▶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증권의 일부환매, 신탁약관 제26조에서 열거한 사항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약관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 ▶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1월간은 약관 제 37 조 제 1 항 제 3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모두투자신탁의 투자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모두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수탁회사에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모두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2. 모두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모두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나.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및 어음(법 제 2 조 제 7 호의 투자증권에 해당하는 어음에 한합니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 법시행령 제 6 조 제 1 호 내지 제 6 호 및 제 8 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채무증서 및 어음, 동조항의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증권거래법 제 2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에 한합니다), 채무증서 및 어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 6 조 제 1 호 내지 제 6 호 및 제 8 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것에 한합니다) 및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외국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서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과 유사한 것을 포

- 함한다) 및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다.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매일의 당해 주식의 증가의 총액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증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월간 평균한 비율
을 말합니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월간 적용합
니다.
3.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
과하는 행위
 5.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
1 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 월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매 1 월이 되는 날 전에 모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에는 그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하 “위험평가액”이라 합니다]이 모투
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6.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모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7.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
할 수 있습니다.
 8. 모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
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
는 행위
- ▶ 모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 수익
증권의 일부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모투자신탁약관 제36조 제1항 제
7호 내지 제11호, 모투자신탁약관 제3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
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 ▶ 모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1월간은 모투자신탁약관 제36조 제1항 제9호, 모투
자신탁약관 제37조 제1항 제2호 본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II. 자산의 평가

1. 자산의 평가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계산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 또는 기준가격 산출 시점 현재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으로서 외국의 최종시가가 공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외화 표시 자산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자산운용회사에 의하여 구성된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는 아래의 기준에 의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 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함)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모두자신탁의 간접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으로 평가하고 상장된 간접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함.
외국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간접투자증권은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등(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함)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평가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외화로 표시된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외화를 한국 원화로 환산하는

환율은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증개회사에서 제공하는 최근거래일의 매매 기준을 또는 최종시가로 합니다. 이 경우, 외국환증개회사가 매매기준을 또는 최종시가를 제공하기 전에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미리 제공한 환율(외국의 뉴스통신사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외국환증개 회사에 제공하는 환율이 있는 경우 그 환율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그 환율을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Ⅲ.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증개회사의 선정기준

1. 증개회사의 선정기준
- ① 증개회사 선정 목적 및 필요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증개회사의 역량 및 서비스 질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수행하여 거래 증개회사를 선정함으로써 운용의 투명성 및 펀드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② 평가 항목
증개거래 시장점유율, 거래관련 자격보유여부, 조직 및 인력현황, 리서치 서비스의 질, 감독기관 제재 및 시정조치 내역, 결제안정성, 시장정보 제공능력, 매매체결의 신속성, 거래관련 보안유지 능력, 세미나 개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개회사를 선정합니다.
 - ③ 선정방법
Manager, Analyst, Trader 등 증개회사와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담당자들이 매분기 수행한 평가에 기한 평가결과에 따라 증개회사를 선정합니다.

Ⅳ. 매입 · 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 관련 유의사항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청구하거나 인터넷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매입할 수 있습니다.

당해 투자신탁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래스	자 격
A 클래스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음
C 클래스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음
C-F 클래스	간접투자기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17 조의 2 제 8 항에 따른 기관투자자,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100 억이상 개인, 500 억이상일반법인
C-W 클래스	판매사의 일임형 Wrap 계좌를 보유한 자
C-E 클래스	인터넷 판매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C-S 클래스	투자신탁의 안정된 운용을 위해 25 억이상 투자하는 자산운용회사의 모 회사

-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수익증권의 매입신청인은 신원 확인을 위한 자료(법인의 경우 법인의 법적 실체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의 매입신청인이 타인의 대리인인 경우, 매입·신청인은, 당사자 본인의 신원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매입신청인이 당사자 본인의 신원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

였고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게 됩니다.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매입신청인이 신원확인자료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의 매입신청은 거절됩니다.

수탁회사,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는 환매대금의 지급이 자금세탁방지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통지받거나 의심되는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마켓타이밍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의 마켓타이밍 또는 이와 관련된 과도한 매매, 단기매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켓타이밍은 간접투자기구 순자산가치의 산정방법의 불완전성, 결합 또는 시차를 이용하는 동일한 간접투자기구의 수익증권에 대한 단기간의 매입, 환매행위를 의미합니다. 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운용회사는 그 재량에 의하여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마켓타이밍 행위를 하거나 마켓타이밍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투자자의 수익증권 매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환매 관련 유의사항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환매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한 경우로서 이 기준일의 7영업일 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8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환매연기 법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금액의 지급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탁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부분환매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상기에서 정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부분환매를 결정한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

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회사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 수익자는 환매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구성되는 별도의 투자신탁에 대하여 수익자가 가지는 수익권의 좌수의 비율에 따라서 그 별도의 투자신탁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신탁약관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수익증권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3. 분배관련
유의사항**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달리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일(당일 포함)로부터 10영업일 전에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종류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자산운용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신탁약관에 따라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 상환금 지급

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합니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인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는 경우 모투자신탁재산인 투자재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재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권에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
의 시효**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정동 34-35 제이피모간프라자 02-758- 5200
회사연혁	2007. 2 설립 2007. 5 투자신탁운용업 본허가 취득 2007. 6 영업 개시

- 자산운용회사가 속한 기업 집단의 개요

JPMorgan 자산운용은 JPMorgan Chase & Co.의 일원으로서, 세계적 수준의 투자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자산운용의 선두주자입니다. JPMorgan 자산운용은 1 조 달러(2006. 12. 31. 현재 JPMorgan Chase & Co.의 고객 펀드)에 이르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고 전세계 39 개 지역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JPMorgan 자산운용은 강력한 현지시장 지배력과 함께 글로벌 운용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자산 분야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JPMorgan Chase & Co.(뉴욕 증권거래소 명칭: JPM)는 전세계적으로 1 조 4,000 억 달러의 자산과 50 여개국의 사무실을 두고 있는 선도적인 글로벌 금융서비스 회사입니다. JPMorgan Chase & Co.는 투자은행, 소비자 금융서비스, 소기업 상업은행, 금융거래, 자산운용, 그리고 사모투자 부문의 선두주자입니다. JPMorgan Chase & Co.는 다우존스 공업평균지수의 대상회사중 하나로서 미국에서 수백만의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수의 세계 일류기업, 기구 및 정부 고객을 JPMorgan 과 Chase 브랜드의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www.jpmorganchase.com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업무

- ①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②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③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 의무 및 책임

- 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 ②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④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업무위탁

- ①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일반사무관리회사로 HSBC펀드서비스(주)를 선임하였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이 투자신탁의 활동과 관련한 장부, 기록 및 명세서의 보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러한 장부 등을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의 열람을 위해 제공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 ② 증권예탁결제원에 대한 업무 위탁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③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
 자산운용회사는 법 제176조와 범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두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의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자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 조사분석 등을 **JPMorgan Asset Management (UK) Limited**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변경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예정)

JPMorgan Asset Management (UK) Limited는 1974년 영국과 웨일즈 회사법에 근거하여 영국금융감독청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2007년 12월 31일 현재 1,293억 유로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모두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펀드매니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운용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에 지급하는 보수를 자산운용회사의 고유자산으로 부담합니다.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자산운용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이해상충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과 모두자신탁의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이러한 금지는 이 투자신탁 및 모두자신탁과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법 제9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최근 2개
사업연도의
요약 재무내용

(단위:백만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항 목	2008.3.31	2007.3.31	항 목	2008.3.31	2007.3.31
유동자산	10,863	9,624	영업수익	2,938	6
고정자산	2,786	653	영업비용	9,587	384
자산총계	13,649	10,277	영업이익	-6,650	-377
유동부채	1,676	288	영업외수익	-	-

고정부채	-	366	영업외비용	-	-
부채총계	1,676	654	경상이익	-6,650	-377
자본금	19,000	10,000	특별이익	-	-
이익잉여금	7,027	377	특별손익	-	-
자본조정	-	-	세전순이익	-6,650	-377
자본총계	11,973	9,623	당기순이익	-6,650	-377

4. 운용자산 규모

2008. 6. 30. 기준 (단위: 억원)

종 류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상품	부동산	채간접	기 타	총 계
수탁고	10,758	-	-	-	-	-	42	-	10,800

5. 운용전문인력
에 관한 사항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2008년 6월말 기준)		주요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간접 투자기구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기준환	40세	이사	11개	약 9,760억 원	- 미시간 대학교 - 동서증권, 동원증권, 동부화재, CJ자산운용 -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

* 상기 운용역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하는 **책임 운용전문인력**이며 상기 인력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운용회사 또는 자산운용협회에서 추가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명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Luke Richdale	- 캠브리지 대학교 - 1993년 제이피모간자산운용 입사 - 중동지역 펀드매니저, 지중해지역 애널리스트, 중남미지역과 남아프리카지역전문 펀드매니저, - 현재 이머징마켓 펀드매니저

* 모두자신탁의 외국통화표시자산의 운용은 **JPMorgan Asset Management(UK) Limited**의 상기 펀드매니저가 담당합니다. 펀드매니저는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교체될 수 있습니다.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삼성증권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2가 6 종로 타워빌딩 ☎ 1588-2323	www.samsungfn.com 참조
외환은행	주소: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81 ☎ 1544-3000	www.keb.co.kr 참조
한국씨티은행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9 ☎ 1588-5753	www.citibank.co.kr 참조
광주은행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 ☎ 1588-3388	www.kjbank.com 참조
HSBC 은행 서울지점	주소: 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25번지 ☎ 1588-1770	www.kr.hsbc.com 참조
(주)한국 스탠다드 차타드제일은행	주소: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00번지 ☎ 02)3702-3114	www.scfirstbank.com 참조
하나은행	주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 ☎ 02)2002-1111	www.hanabank.com 참조
하나대투증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 1588-3111	www.hanadaetoo.com 참조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	주소 :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84번지 ☎ 02)3707-0500	-
대신증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 02)769-2000	www.daishin.co.kr 참조

2. 주요 업무

- ① 간접투자증권의 모집 및 매출
- ②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 ③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의 지급
- ④ 세금의 원천징수 및 납부
- ⑤ 간접투자증권에 대한 제신고 접수 및 처리
- ⑥ 기타 위의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 의무 및 책임

- ①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동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② 판매회사의 임직원 및 취득권유인은 법제57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③ 판매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매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④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판매행위
준칙**

- ①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판매행위준칙을 제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판매행위준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가.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 나. 투자자로부터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함)
 - 다.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 라.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 마.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시행령이 정하는 행위
- ② 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판매행위준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③ 판매회사는 자기가 판매하는 간접투자증권의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고유재산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다른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④ 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⑤ 자산운용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행위준칙과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판매행위준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Ⅲ. 수탁회사

- 1. 회사의 개요
 - 회사명 : 국민은행(주)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TEL) 02-1588-9999
 - 회사연혁 : 2001.11 주택은행과 국민은행 합병, 국민은행으로 명칭변경
- 2. 주요 업무
 - ①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②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③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④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⑤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⑥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⑦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⑧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⑨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의무 및 책임
 - ① 수탁회사는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투자신탁 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 산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매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 ④ 수탁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⑤ 수탁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탁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⑥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V. 일반사무관리회사

- 1. 회사의 개요**
- | | |
|----------|---|
| 회사명 | : HSBC 펀드서비스(주) |
| 주소 및 연락처 |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교보빌딩 6층 ☎ 02)3771-9800 |
| 회사연혁 | : 2000년 3월 설립
2000년 8월 금융감독위원회 펀드 일반사무관리업무 등록
2003년 6월 HSBC 그룹으로 합류 |

- 2. 주요 업무**
- ①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간접투자자산을 평가
 - ②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
 - ③ 기준가격의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통보
 - ④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 의무 및 책임**
- ①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자산운용회사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V.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자산운용회사는 아래 채권평가회사중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이용하여 채권 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KIS 채권평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6 삼천리빌딩 2층 T. 02-3215-1400	설립일 : 2000. 6. 20 자본금 : 30억원
한국채권평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T. 02-399-3350	설립일 : 2000. 5. 29 자본금 : 50억원
나이스채권평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3번지 T. 02-398-3900	설립일 : 2000. 6. 16 자본금 : 47.5억원

2. 주요 업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자산운용회사에 제공

제 4 부 수익자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I. 수익자의 권리

- 1.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 수익자는 전체 수익자총회에서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소집주체 및 통지**
- ① 수익자총회는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며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자산운용회사가 지정한 지역에 개최합니다. 다만,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자산운용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② 만약 1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③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의결권** 의결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합니다.
 - ② 수익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의결방법**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대리인에 의한 경우 포함)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 외에 신탁약관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대리인에 의한 경우 포함)의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 및 투자신탁의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의결권의 4분의 1이상의 동의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 연기수익자 총회**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신탁약관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과반수로 의결합니다.

- 2. 잔여재산 분배**

 -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수탁회사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투자신탁 해지에 따른 상환금등을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판매회사에게 인도합니다.
 - ③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④ 자산운용회사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①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의 투자설명서, 신탁약관, 각종 계약서등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다만 수익자가 다음과 같은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다른 수익자에게 손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자산매매거래내역서

- 4. 손해배상책임**

 - ①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②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①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①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 영업연도의 결산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건전성·수익성 및 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② 자산운용보고서 및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영업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이 기재된 서류
- **자산운용 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이 투자신탁의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자산운용회사가 매월 1회 이상 자산운용보고서를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시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수탁회사 보고서**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수탁회사가 수탁회사, 판매회사,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시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감사보고서** 회계감사인은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와 그 간접투자기구의 판매회사,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에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기준가격계산서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그리고, 회계감사인은 비용문제 등을 포함한 회계처리가 각 종류 수익권과 이 투자신탁의 전체 수익권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 **신탁약관의 변경**
 - ① 신탁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수탁회사의 변경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②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한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컴퓨터통신을 통한 1회 이상 공고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 ④ 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부터 1월 이내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기간(이하 “이의신청기간”이라 합니다) 내에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신탁약관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수익자가 신탁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환매수

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다만, 위 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⑤ 일간신문에 광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광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광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광고합니다.

- 의결권 행사**
- ①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②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 제10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 ③ 자산운용회사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상기의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수시공시**
-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 회사·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수도
 -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등의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 모두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여하한 사항의 발생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그 내용.

